

전용부분 내부공사 등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입주사 전용부분의 내부공사 시행과 사용을 합리적으로 규율하여 전체 입주사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위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용부분의 내부공사 승인 신청)

- ① 건축, 전기, 소방, 기계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개시7일 이전에 공사기간을 명기하여 공사계획서와 도면 및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첨부하여 입주사 지원본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② 소음·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공휴일을 이용하여 실시하며, 사전에 해당 층 및 상하층의 입주사에게 양해를 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3조(공사자재 등의 처리)

- ①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장비는 전용부분내부에 수용하여야 하며 외부에 적재하거나 비치하지 못한다.
- ② 공사로 인한 쓰레기는 시공자가 수거하여야 하며 단지 내에서 처리하지 못한다.

제4조(비산먼지 등 방지의무)

- ① 공사 시행자는 먼지가 전용부분 밖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냄새 등으로 타 입주사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5조(전용부분에서의 동물사육 등 금지)

입주사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1. 개, 고양이, 토끼, 쥐,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
2. 뱀,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
3. 조류를 기르는 행위

제6조 (공사 승인권자)

① 입주사가 제2조의 공사승인을 요청한 경우 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소음이나 진동을 유발하지 않는 1일 이내의 공사: 해당동의 담당자
- 2.소음이나 진동을 유발하지 않는 7일 이내의 공사: 시설보존팀장
- 3.소음이나 진동을 유발하는 공사 또는 7일을 초과하는 공사: 본부장

② 공사현장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전항의 승인한 자가 공사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.

③ 입주사지원본부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승인으로 입주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사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.

제7조(신고)

입주사가 전유부분의 공사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이상 사고가 있는 경우 즉각 입주사지원본부로 신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책임)

입주사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공사상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에서 누수·누출·누전 등으로 타 입주자들의 시설 또는 관리주체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 등에 협조하고 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.